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5. 1. .

법제처 심사 전

법무부
인권국

1. 개정이유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의 해촉 사유를 추가하여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결정이 있는 경우 수사가 재개될 때까지 형사절차가 중단되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 기간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보수 결정 시 검사의 재량 증감 한도를 축소하여 보수 결정 기관별로 발생할 수 있는 편차를 최소화 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선전담변호사 해촉 사유 추가(안 제7조의4)

국선전담변호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하는 등 직무수행이 불성실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성실한 국선전담변호사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등 제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

나. 출산휴가 기간의 보수 지급 기준 신설(안 제7조의5)

국선전담변호사가 본인의 출산으로 인하여 업무를 중지하는 경우 최대 90일동안 월 보수 전액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국선전담변호사의 모성 보호와 기본적 처우 개선을 도모함

다. 법률 지원 요청 기관 추가(안 제11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만 규정하고 있어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센터)를 추가하여 위 센터에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 기간 명시(안 제13조)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사건이 수사중지 된 경우 피의자의 소재 발견 등으로 인해 수사가 재개될 때까지 형사절차가 중지되는 점을 고려하여 형사절차에서 법률조력을 제공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 기간에 대한 기준을 추가함

마. 재량 증감 한도 축소(안 제20조)

비전담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함에 있어 검사가 1/2 범위 내에서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다소 광범위하여 편차가 발생하므로 재량증감의 한도를 1/5 범위 내로 축소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 00. ~ 2025. 1.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2호 중 “그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해당”을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선전담변호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하는 등 직무수행이 불성실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의5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의 업무중지 허가신청 사유가 국선전담변호사 본인의 출산인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을 한도로 하여 해당 시간 동안 월 보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업무중지 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말일까지 전월(全月)인 경우에는 월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2. 업무중지 기간이 월의 일부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

제11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2제8항에 따른 범죄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제1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결정이 있는 경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 제4항 후단에 따라
검사가 사건기록을 반환한 때까지(다만, 검사의 「형사소송법」 제197
조의3에 따른 시정조치요구 및 송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 항 제2
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2분”을 “5분”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4(국선전담변호사의 해촉)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전담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의4(국선전담변호사의 해촉)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선전담변호사가 <u>그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령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u>	2. ----- <u>해당</u> ----- -----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국선전담변호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하는 등 직무수행이 불성실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7조의5(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중지) ①·② (생 략)	제7조의5(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중지) ①·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제1항의 업무중지 허가신청 사유가 국선전담변호사 본인의 출산인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을 한도로 하여 해당 시간 동안 월 보수를 다음

③・④ (생략)

제11조(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의 협조 요청)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 으로부터 형사절차 등에 참여하는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1. ~ 5. (생략)

<신설>

제13조(국선변호사의 선정 기간)

① 국선변호사의 선정 기간은 제16조에 따라 국선변호사의 선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업무중지 기간이 월의 첫날 부터 말일까지 전월(全月)인 경우에는 월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2. 업무중지 기간이 월의 일부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소정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11조(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의 협조 요청) -----

-----.

1. ~ 5. (현행과 같음)

6.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2제8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제13조(국선변호사의 선정 기간)

① -----

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절차가 중첩되거나 연속하여 진행되는 경우에는 모든 절차가 종결된 때까지로 한다.

1. ~ 5. (생략)

<신설>

② (생략)

제20조(보수등의 기준) ① ~ ③ (생략)

④ 제19조제1호에 따른 국선변호사의 보수는 사안의 난이도, 국선변호사가 수행한 직무의 내용, 피해자 지원에 들인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

--. -----

-----.

1. ~ 5. (현행과 같음)

6.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결정이 있는 경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 제4항 후단에 따라 검사가 사건기록을 반환한 때까지(다만, 검사의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에 따른 시정조치요구 및 송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보수등의 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의 2분의 1 범위에서 검사가 증
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⑤ (생 략)

-- 5분-----
-----.

⑤ (현행과 같음)